

'94.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994. 7. 7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7. 7.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4. 7. 7
-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 7. 7)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재무과장 최 영명)

- 가. 제출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1) 취득 —— 2필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²)	취득시기	취 득 목 적
아현동 417-7	대 건물	463.0 121.42	하 반 기	아현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동교동 181-3	대 건물	265.8 112.0	하 반 기	동교동 가정복지 시설부지 매입

2) 매각 —— 3필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²)	취득시기	취 득 목 적
아현동 570-67	대	18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공덕동 89-21	대	22	"	"
마포동 339-2	대	1.8	"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건재)

- 취득대상 재산 2필지중 아현동 417-7 소재재산은 마포경찰서 건너편 마포중앙교회 방향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현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이며, 동교동 181-3 소재재산은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부지임.
 - 동 취득대상 재산2필지의 부지매입비는 '94년도 예산에 기하 반영되어 있음.
 - 아현동 570-67동 매각재산 3필지는 지방재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매각하는 재산임.
- 집행기관에서는 재산의 취득처분등 재산운용에 있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취득대상재산 중 아현동 417-7 소재 아현1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에 앞서 하영기 총무국장의 배경설명 있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94.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

의안 번호	318
----------	-----

제출년월일 : 1994. 7. 7.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골자 :

1) 취득 —— 2필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²)	취득시기	취 득 목 적
아현동 417-7	대	463.0	하 반 기	아현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건물	121.42		
동교동 181-3	대	265.8	하 반 기	동교동 가정복지 시설부지 매입
	건물	112.0		

2) 매각 —— 3필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²)	취득시기	취 득 목 적
아현동 570-67	대	18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공덕동 89-21	대	22	"	"
마포동 339-2	대	1.8	"	"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예 산	건수	수 량	예 산	건수	수 량	예 산	
취 득	계	토지	2	515.20	958,320	2	728.80	1,418,125	4	1,244	2,376,445	
		건물	2	301.63		2	233.42		4	535.05		
	매 입	당초	토지	2	515.20	958,320				2	515.20	958,320
			건물	2	301.63					2	301.63	
		변경	토지				2	728.80	1,418,125	2	728.80	1,418,125
			건물				2	233.42		2	233.42	
	처 분	계	토지	24	1265.20	1,054,865	3	41.8	42,910	27	1,307	1,097,775
			건물	0	0	0	0	0	0	0	0	0
매 각		당초	토지	24	1265.20	1,054,865				24	1265.20	1,054,865
			건물	0	0	0				0	0	0
		변경	토지				3	41.8	42,910	3	41.8	42,910
			건물				0	0	0	0	0	0
사용 및 대부허가	계	건물	1	192.07	25,929				1	192.07	25,929	
	당초	건물	1	192.07	25,929				1	192.07	25,929	

'94.년도 취득대상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 건물	아현동 417-7	463 121.42	1,120,000	하반기	아현1동 청사부지매입	아현동 417-7 김찬수	
2	대 건물	동교동 181-3	265.8 112	298,125	하반기	동교동 가정북 지시설 부지매 입	서울특별시	

관리계획변경(취득)재산 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지적(m ²)	취득대상재산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아현동 417-7	대 건물	463.0 121.42	마포구 아현동 417-7 김찬수	

2. 재산의 현황

- 위치: 마포경찰서 맞은편 마포중앙교회 방향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태: 단층 주택으로 사용중(목조/세멘 외잡)

3. 취득목적: 아현 제1동 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 매입

관리계획변경(취득)재산 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지적(m ²)	취득대상재산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아현동 181-3	대 건물	265.0 112.0	서울특별시	

2. 재산의 현황

- 위치: 동교동로터리에서 홍익대 방향 우측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태: 단층 주택으로 사용중.(연와조/평옥개)

3. 취득목적 :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부지 매입

'94년도 매각대상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 각	매수희망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1	대	아현동 570-67	18	18	22,680	하반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아현동 570-51 조 정 윤	
2	대	공덕동 89-21	22	22	18,700	하반기	"	공덕동 90-1 양 상 식	
3	대	마포동 339-2	1.8	1.8	1,530	하반기	"	마포동 340-3 정태훈의 1인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 내용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적(m ²)	취득대상재산소유자주소·성명	비 고
아현동 570-67	대	18	아현동 570-51 조 정 윤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아현중학교 뒷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 매수 희망자가 주거용(건물)으로 사용중임.

3. 매각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규정에 의거 매각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적(m ²)	매수희망자주소및성명	비 고
공덕동 89-21	대	22	공덕동 90-1 양 상 식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아현동과 구관리동길 중간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

○ 이용상태 : 매수 희망자가 주거용(건물)으로 사용중임.

3. 매각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매각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적(m ²)	매수희망자주소및성명	비 고
마포동 339-2	대	1.8	마포동 340-3 정태훈외 1인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도화동 마포동민회(노인정)맞은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임.

3. 매각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규정에 의거 매각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

의안 번호	320
----------	-----

제출년월일 : 1994. 7. 18.
제 출 자 : 총무재무위원장

○ 주 문

1.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면 마포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동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 하는등 재원 마련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함.
2. 마포구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망원동 수해 피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

한 마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임.

○ 제안이유

구민회관의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임.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 구중 16개 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 구가 건립추진중에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지역 및 환경적인 특수한 여건을 재삼 인식하여 구민의 복지행정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회관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